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5
----------	-----

제출일자 : 1995. 12.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 제 안 이 유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 및 시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며, 종래 산업용으로 사용하던 짚형자동차가 레저·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승용차와 동일 과세하여야 하나, 세부담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안정성 저해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감면시행 만료('97년도)전인 '96년도에는 현행 조세율을 소폭 인상 시행코자 함.

○ 주 요 골 자

- 국가유공자증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에 한하여 자동차세 면제(안 제2조 제2항)
-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장애인이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사용하는 자동차도 포함(안 제4조)
-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과세표준일 현재 직접 그 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안 제6조의 2)
-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에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포함(안 제7조 제7호)
- 임대주택에 대한 면제대상중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도 포함(안 제12조 제2항)
-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대상중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안 제13조 제1항 제2호)
-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세액 소폭 인상(안 제17조)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중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동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2조 제2항중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을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생략)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
제4조(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현행	개정안
제13조(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생략) 1.(생략)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의 <u>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u> 3. <u>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회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u> 제17조(궤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궤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u>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u> 제13조(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u>지성 받은 자와</u> <u>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u> 3. <u>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u> 제17조(궤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